

#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조사경과보고

□ 조사기간: 2020. 6. ~ 2021. 4.

| 차수  | 일 시         | 활동내용                                | 비고 |
|-----|-------------|-------------------------------------|----|
| 제5차 | 2020.9.15.  | ○ 업무보고의 건<br>- 12개 사업 대상            |    |
| 제6차 | 2020.10.6.  | ○ 현지 확인 실시<br>-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곤충체험학습장 |    |
| 제9차 | 2021. 3. 9. | ○ 증인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    |

## □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적격자 선정 문제점

- 우선협상대상자인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은 정량평가 결과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여 차점자와 0.1점 차이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음.
- 정량평가 자료 조사결과 1순위 업체의 실적자료 중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수가 포함되어 정량평가 자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결과 1순위 업체와 2순위간 0.4점 차이로 순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확인됨.

## □ 조사특위 요구사항

-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영등포구의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청년센터 사업이 중단된 부분은 영등포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보임
-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2021. 4.**

**영 등 포 구 의 회**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 목 차 ■

|                      |    |
|----------------------|----|
| 1. 조사 근거 .....       | 1  |
| 2. 조사 목적 .....       | 1  |
| 3. 행정사무조사 개요 .....   | 1  |
| 4. 특별위원회 구성 .....    | 2  |
| 5. 추진 경과 .....       | 2  |
| 6. 조사 활동 .....       | 3  |
| 7. 조사 결과 .....       | 4  |
| 8. 조사 결과 처리 의견 ..... | 5  |
| 9. 향후 계획 .....       | 11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 I 조사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II 조사 목적

- 영등포구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설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최선을 다해 실시하였음.
-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있어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III 행정사무조사 개요

- 구성일자: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2020. 6. 24.)
- 발의의원: 이미자 의원 외 5명 발의
- 조사기간: 2020. 6. ~ 2021. 4.
- 조사대상: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31개 사업(붙임 1 참조)
- 조사범위
  - 위탁 사업 및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감독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각종 법령 및 조례, 지침의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IV 특별위원회 구성

### □ 조사반 편성

|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  |             | 비고 |
|----------------------|--------------------|-----|-------------|----|
|                      |                    | 성명  | 소관상임위       |    |
| 김길자<br>(사회건설<br>위원회) | 최봉희<br>(행정<br>위원회) | 오현숙 | 행정<br>위원회   |    |
|                      |                    | 유승용 |             |    |
|                      |                    | 장순원 |             |    |
|                      |                    | 김화영 | 사회건설<br>위원회 |    |
|                      |                    | 이규선 |             |    |
|                      |                    | 이미자 |             |    |

## V 추진 경과

| 차수   | 일시          | 활동내용                                      | 비고 |
|------|-------------|---|----|
| 제1차  | 2020.6.26.  | ○ 위원장 선임의 건<br>○ 부위원장 선임의 건               |    |
| 제2차  | 2020.7.10.  | ○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    |
| 제3차  | 2020.8.4.   | ○ 시행계획서 작성의 건                             |    |
| 제4차  | 2020.9.8.   | ○ 업무보고 요구의 건                              |    |
| 제5차  | 2020.9.15.  | ○ 업무보고의 건<br>- 12개 사업 대상                  |    |
| 제6차  | 2020.10.6.  | ○ 현지 확인 실시<br>-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곤충체험학습장       |    |
| 제7차  | 2020.11.13. | ○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br>- 보고서 채택 보류              |    |
| 제8차  | 2021. 2.15. | ○ 증인출석 요구의 건                              |    |
| 제9차  | 2021. 3. 9. | ○ 증인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    |
| 제10차 | 2021. 4.13. | ○ 경과보고의 건                                 |    |
| 제11차 | 2021. 4.20. | ○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사경과보고의 건<br>○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 VI

# 조사활동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0.6.26.)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2020.8.4.)



특별위원회 간담회  
(2020.9.1.)



제5차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2020.9.15.)



곤충체험학습장 현지 확인  
(2020.10.6.)



서울청년센터영등포 현지 확인  
(2020.10.6.)

## **VII** 조사 결과

### **□ 총 평**

- 이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당부하고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를 통해 영등포구의 전반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조사 기간 중 11차의 회의와 3회의 간담회, 1회의 증인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2개 시설의 현지 확인 등 위원회의 내실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조례 개정 요구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권고 조치 예정임.

### **□ 주요 지적사항**

- 영등포구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집행부에서는 민간 위탁 사무를 추진하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전례 답습, 관련 규정 미준수가 지적되었음.
- 현재 중단된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사업의 후속조치 이행, 수탁체 선정시 정량·정성평가별 배점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수립, 심사위원 위촉시 전문성 확보 철저, 민간위탁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 철저, 위탁 관련 조례 개정, 시설 위탁시 신규법인(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약정 이행여부 및 전입금 사용여부 점검 등을 시정·권고하였음.
-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할 것을 당부함.

## VIII

# 조사 결과 처리 의견

### □ 조사결과 총괄

| 계  | 조치사항 |    |      | 비고 |
|----|------|----|------|----|
|    | 시정   | 권고 | 조치완료 |    |
| 12 | 8    | 3  | 1    |    |

### □ 세부 시정 및 권고사항

| 조치 | 내 용  | 소관부서  |
|----|--|---|
| 시정 | <p><b>1. 수탁체 선정시 평가항목별 정량·정성평가별 배점 구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 선정시 부서별, 사업별로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이 심사기준표상 정량·정성평가의 구분 없이 심사위원회에 의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li> <li>- 이는 평가의 공신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항목별로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li> <li>● <b>근중체험학습장</b>의 경우 5개 평가분야로 구분하고 모두 정성평가하였으나, 시설운영 실적, 전문지식,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은 정량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li> <li>● <b>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b> 위탁의 경우 3개 평가분야 모두 정성평가하였으나 운영실적 분야는 정량평가에 해당한다 하겠음.</li> <li>● <b>영등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b>의 경우는 3개의 평가분야에서 정량, 정성 구분 없이 정성평가하였으나 ‘운영실적’ 평가분야에서 시설 및 장비관리, 계획대비 이행실적, 만족도 조사 등은 정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정성으로 처리하였음.</li> </ul> | <p>공통<br/>(미래교육과<br/>사회적경제과<br/>자치행정과<br/>어르신복지과)</p> |



| 조치 | 내 용   | 소관부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등포대학입학정보센터</b>는 3개의 평가분야에서 정량, 정성 구분 없이 심사처리하였으나 평가분야 중 ‘운영실적’, ‘법인 공신력’ 분야 중 사업운영 실적, 조직역량강화 등의 항목은 정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정성으로 처리함</li> <li>● <b>자원봉사센터</b> 위탁의 경우 6개 평가분야별 세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시에는 배점표별 평가가 아닌 위원별 정성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졌음. 일례로 24점 배점의 법인의 공신력 평가시 결격사유 여부, 부채현황, 이사회 구성에 관련 경력자 참여 여부 모두 객관적인 지표로 정량평가하여야 하나 위원별로 최고점 21점에서 최저점 8점까지 평가가 이루어졌음.</li> <li>● <b>구립영등포·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 행복발전센터</b>는 3개의 평가분야에서 정량, 정성 평가 구분 없이 심사처리됨.</li> </ul> |      |
| 시정 | <p><b>2.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 수립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에서는 2020년 1월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대항목으로 공신력(40), 재정능력(20), 사업능력(40)으로 나누고 세부항목별로 정량,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li> <li>- 또한 자치구에도 시의 개정된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지침을 수립 및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및 관리업무를 처리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음.</li> <li>- 민간위탁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각각의 위탁사업의 특성에 맞는 세부평가지표의 평가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지표의 세분화로 공정한 심사기준을 수립할 것.</li> </ul>   | 공통   |

| 조치 | 내 용  | 소관부서   |
|----|--|--|
| 시정 | <p><b>3. 적격자 심사위원 위촉 시 전문성 확보 철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제3항에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조사 결과 심사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이 7명 중 2명, 영등포청년건축학교 7명 중 2명, 서울청년센터영등포 7명 중 2명, 영등포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은 6명 중 4명, 꿈더하기지원센터 7명 중 2명, 자원봉사센터 7명 중 2명으로 조례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음.</li> <li>- 심사위원 위촉 시 조례에 따른 공무원과 민간위촉 위원 비율을 준수하고, 민간위원 위촉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li> </ul> | <p>공통<br/>(사회적경제과<br/>복지정책과<br/>사회복지과<br/>자치행정과)</p> |
| 시정 | <p><b>4. 민간위탁 성과평가 등 기간 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li> <li>-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받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신청을 하고 구청장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성과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li> </ul>   | <p>공통</p>  |

| 조치 | 내 용   | 소관부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와 지침에 따른 위탁 만료 30일 전 성과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이 부적절한 경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촉박한 일정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성과평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li> </ul>   |                 |
| 시정 | <p><b>5.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감사 및 지도감독 철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담당 부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li> </ul>  | 공통              |
| 시정 | <p><b>6. 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관련 조례 개정 요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목록은 사회복지시설 추가 및 삭제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정을 하여야 하므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됨</li> <li>- 별표 1의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li> </ul>  | 복지정책과           |
| 시정 | <p><b>7. 영등포시니어클럽 위탁기간 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최초 위탁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5년의 위·수탁 계약을 진행하였으나</li> <li>- 2020년 5월 위 조례 개정시 구립사회복지시설에 영등포시니어클럽은 포함되지 않음.</li> <li>- 향후 영등포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시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li> </ul> | 복지정책과<br>어르신복지과 |

| 조치 | 내 용   | 소관부서  |
|----|---|---|
| 권고 | <p><b>8. 곤충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체험학습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비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익창출형으로 위탁하던 방식에서 2019년부터 북카페를 포함하여 운영 공간을 확장 리모델링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형으로 민간위탁금을 증액하였음.</li> <li>- 현재 코로나19로 정상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곤충체험학습장을 새롭게 조성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li> </ul>                     | 미래교육과   |
| 권고 | <p><b>9. 시설 위탁시 신규법인(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사업 전체에 대한 채점표를 검토 결과 실적이 많은 법인(단체)이 고득점을 획득하고, 기존 위탁기관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신규법인이 시설을 수탁받는데 어려움이 있음.</li> <li>- 서울시에서도 신생기관 참여 활성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2020년 1월에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우리 구에서도 수탁자 선정 심의시 신규 법인(단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 및 배점 내용을 개선하기 바람.</li> </ul> | 공통  |
| 권고 | <p><b>10.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약정 이행여부 및 전입금 사용 여부 점검 철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구의 16개 사회복지시설 위탁시 약정 법인 전입금이 시설별로 5년간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운영 법인간 전입금의 과도한 차이가 있어 법인 전입금의 차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인 전입금을 위·수탁약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 확인할 것.</li> </ul>  | 복지정책과<br>사회복지과<br>보육지원과<br>아동청소년<br>복지과<br>어르신복지과 |

| 조치 | 내 용   | 소관부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법인 전입금 사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용도 외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li> <li>- 수탁기관 예산 편성 시 민간위탁예산 지원금에서 전입금만큼 감액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li> </ul>   |            |
| 시정 | <p><b>11.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사업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구의회, 관련 단체 및 전문가나 시설 이용 주체인 영등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 왔음.</li> <li>- 수탁자 선정심사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인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은 정량평가 결과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여 차점자와 0.1점 차이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음.</li> <li>- 행정사무조사결과 1순위 업체의 실적자료 중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수가 포함되어 정량평가 자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결과 1순위(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와 2순위(한국메이커스협동조합)간 0.4점 차이로 순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메이커스협동조합이 되어야 함.</li> <li>- 이처럼 수탁자 선정 과정상 논란 및 서울시 감사,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시비는 교부되지 않고 대상지는 빈 사무실 상태로 임대료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li> <li>-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영등포구의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청년센터 사업이 중단된 부분은 영등포구가 책임자 문책 및 소송 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li> </ul> | 사회적<br>경제과 |

| 조치                    | 내 용  | 소관부서  |
|-----------------------|--|-------|
| <b>조치완료</b><br>(의원발의) | <b>12.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의원발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2013년 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됨.</li> <li>- 특히,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온 사실이 있음.</li> <li>- 특위 위원 간 논의 결과 권고안에 포함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li> <li>- 포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및 재위탁시 구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li> <li>·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사항</li> <li>· 선정위원회 구성 시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li> <li>·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li> <li>· 협약시 공증 의무 규정 개정</li> </ul> </li> </ul> | 기획예산과 |

## IX 향후 계획

- 특별위원회 종료 시 결과보고서 작성·채택 후 본회의 의결
- 조사 결과 후 시정 및 건의사항은 집행부 통보 및 사후 확인

## 영등포구 민간위탁 사무 현황

| 국 별                      | 부 서 별        | 계  | 사 업 명          | 비고 |
|--------------------------|--------------|----|----------------|----|
| 총 계                      |              | 31 |                |    |
| 미래비전<br>추진단              | 미 래<br>교육과   | 4  | 근충체험학습장        |    |
|                          |              |    |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
|                          |              |    |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    |
|                          |              |    | 영등포 꿈더하기학교     |    |
|                          | 사회적<br>경제과   | 4  | 무중력지대-영등포      |    |
|                          |              |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    |
|                          |              |    | 영등포청년건축학교      |    |
|                          |              |    |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    |
| 행 정<br>지 원<br>국          | 자치행정과        | 2  | 자원봉사센터         |    |
|                          |              |    |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    |
| 보 건<br>소                 | 건강증진과        | 1  | 치매지원센터         |    |
|                          | 위생과          | 1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    |
| 복 지<br>국                 | 복 지<br>정책과   | 2  |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
|                          |              |    | 영등포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  |    |
|                          | 사 회<br>복지과   | 2  | 장애인사랑나눔의집      |    |
|                          |              |    | 꿈더하기지원센터       |    |
|                          | 보 육<br>지원과   | 2  | 영등포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    |
|                          | 아동청소년<br>복지과 | 3  |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                          | 어르신<br>복지과   | 7  | 여의도복지관         |    |
|                          |              |    | 영등포시니어클럽       |    |
|                          |              |    |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    |
|                          |              |    |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    |
|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              |    |                |    |
| 어르신복지센터및시니어행복발전센터        |              |    |                |    |
|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              |    |                |    |
| 생 활<br>경 국<br>안 통<br>전 국 | 청소과          | 1  | 자원순환센터 선별장 관리  |    |
| 안 통<br>전 국               | 교통행정과        | 2  |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    |
|                          |              |    | 자전거 수리소        |    |